

수산시장 이슈 및 수출입동향 [러시아]

- 수산사업도 러시아의 WTO 가입에 준비
-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동맹관세요금과 관세동맹HS코드 발효
- 동식물검역국, 더 이상 외국생산자와 러시아수입자 간 계약 확인 요구하지 않아..
- 수생생물자원제품 수출허가서 작성절차 변경
- 한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어류, 2012년부터 새로운 양식의 수출증명서 동반
- 2011년 러시아 어획량, 전년대비 5% 이상 증가
- 2011년 1~10월간 어류 수입량 13.9% 감소, 수입액 13.3% 증가

□ 수산사업도 러시아의 WTO 가입에 준비

-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러시아기업인연맹은 WTO가입이 러시아 농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 경제개발부 대표자들의 언급에 따르면,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에는 수출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보조금이 금지될 것임. 수출 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유지될 것이지만 단일세율로 바뀔 것임(현재 부가가치세는 10%와 18%임). 2012년 7월 1일부터 관세율 제한수준 준수에 따른 러시아의 의무도 시행되기 시작할 것임. 특히, 일부 항목에 대한 관세율이 감소될 예정임. 연어류 관세율은 5년 이내 10%에서 3%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현 단계에서 관세율에 있어서 특혜를 제공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최혜국대우는 WTO 규정에 의해 금지되며, 하지만 회색지대에서는 국가들 간에 운영되고 있음. 러시아연방의 경우, 최혜국대우가 운영되는 국가들과의 협력 시에 관세율에 있어서 특혜는 무기한 유지될 예정임. 이를 위해 러시아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기타 국가들과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WTO 가입 이후 국가세관당국은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임. 러시아에는 과세가격을 규정하는 6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관세를 산정하는 근거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임
-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 과정에서 외국 파트너들은 러시아의 현행 수역-위생규정들이 다른 WTO 회원국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그와 같은 엄격한 규제권리를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WTO 회원국 중의 한 나라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러시아는 그와 같은 조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함

(자료: 피쉬뉴스)

□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동맹관세요금과 관세동맹HS코드 발효

- 러시아 관세청이 대외경제활동 참가자들에게 공고한 바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부터 관세동맹의 일부 관세법규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됨
- 2012년 1월 1일부터 벨라루시-카자흐스탄-러시아 관세동맹의 단일관세요금 신규개정과 관세동맹의 대외경제활동 단일상품목록(HS코드) 신규개정이 발효됨
- 관세동맹의 단일관세요금은 3국에서부터 관세동맹의 단일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상품들에 적용되는 수입관세율로 관세동맹의 HS코드에 따라 체계화된 것임. 해당 서류들은 관세동맹위원회 공식 사이트(<http://www.tsouz.ru>) '관세요금규제'부문에서 확인해볼 수 있음
- 어류 및 해산물, 어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가공도와 기타품질특성정도, 조제법에 따라 10-20% 정도일 것임
 - 활어(HS코드 0301), 신선 혹은 냉장 어류(어류피레트 및 기타어육 제외)(HS코드 0302), 냉동어류(어류피레트 및 기타어육 제외)(HS코드 0303), 신선, 냉장 혹은 냉동 어류피레트 및 기타어육(파르쉬 포함)(HS코드 0304)은 10%
 - 건조, 염장 혹은 염수장 어류, 훈제어류(훈제과정 또는 훈제 전에 열처리여부불문), 어류의 분,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HS코드 0305)는 10-20%이며, 이때 어류의 분,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는 5%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혹은 염수장한 것)와 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의 여부 불문한 훈제한 갑각류(훈제과정 또는 훈제 전에 열처리여부불문),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그리고 갑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HS코드 0306)는 10-20%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혹은 염수장한 것)과 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의 여부 불문한 훈제한 연체동물(훈제과정 또는 훈제 전에 열처리여부불문), 연체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HS코드 0307)는 10-15%
-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혹은 염수장한 것)과 훈제한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 제외, 훈제과정 또는 훈제 전에 열처리여부불문),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 제외)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HS코드 0308)은 10-15%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혹은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HS코드 160300)은 15%
- 조제 혹은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HS코드 1604)은 15-20%
- 조제 혹은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HS코드 1605)은 15-20%

(자료: 연방수산청)

□ 동식물검역국, 더 이상 외국생산자와 러시아수입자 간 계약 확인 요구하지 않아..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은 외국생산자들과 러시아수입자들 간에 수생생물자원으로 만들어진 제품 공급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함
- 간소화된 대러 어류 반입 작성절차가 효력을 발휘함. 동식물검역국 행정규정의 새로운 버전 №1이 발효되었다고 당국 홍보실은 발표함. 이는 외국생산자들과 러시아수입자들 간에 어류 및 기타 수생동물로 된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 존재여부 확인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음을 의미함
-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통제기능은 정보시스템 '아르구스(Argus)'를 통해 자동적으로 실현될 예정임. 즉, 대외경제참가자들과 수출국의 국립수의국에 별도의 부담을 주는 것 없이 투명하게 수행될 것임
- 계약확인 부재라는 사유로 2012년 허가서 발급을 거부당했던 대외경제참가자들은 다시 동일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이외에도, 동식물검역국의 니콜라이 블라소프 부국장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동식물검역국은 이러한 유형의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전자인증에 관한 협정을 수출국들의 일부 국립수의국과 달성하고 비즈니스에 훨씬 더 편리한 감독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노력중임

(자료: 동식물검역국, 피쉬뉴스)

□ 수생생물자원제품 수출허가서 작성절차 변경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은 수생생물자원으로 만들어진 동물성산물제품(어류 등)을 반출(수출)하기 위한 허가서 작성절차가 곧 변경된다고 통보함
- 과거에도 현재에도 허가서는 발급되고 있으며, 허가서발급 신청서는 제품반출허가서를 요청하고 서류가 발급되는 모든 생산업자들을 열거하는 양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때때로 이 목록은 수십 페이지가 되기도 함
- 동식물검역국 홍보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가까운 시일 내에 허가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작성될 것이며, 3가지로 나뉘질 것임
- 러시아연방에서 생산된 제품이면서 공급승인을 받은 생산업자 목록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들로 발송되는 제품의 경우, 1) 현행 절차가 유지될 것임

- 공급승인을 받은 생산업자 목록을 요구하는 국가들(예를 들어, 중국, EU, 베트남, 한국)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제품의 경우, 2) 구체적인 생산업자(혹은 몇몇 생산업자들, 하지만 해당목록에 포함된 모든 생산업자는 아님)의 제품 반출에 대한 허가서를 받을 수도 있음. 3) 또한, 이 경우에 대외경제활동참가자들은 해당 국가에 따른 해당 목록에 있는 모든 생산업자들의 제품 반출에 대한 허가서를 받을 수도 있음. 세 번째 경우는 수출업자들이 반출신청서 작성 시에 또한 당국 직원이 결정문 작성 시에 시간과 노력을 줄이게 할 것임

(자료: 동식물검역국, 피쉬뉴스)

□ 한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어류, 2012년부터 새로운 양식의 수출증명서 동반

- 2012년부터 식용어류제품의 한국반입 시에 새로운 조건이 러시아공급업자들에게 적용되게 됨. 상품은 새로운 양식의 수출(위생)증명서를 동반하게 될 것임
- 한국농림수산식품부와 러시아동식물검역국 간의 양해각서 범주 내에서 수입 및 수출 어류·어류제품의 수의-위생안전과 품질관리에 따른 러시아-한국 실무그룹회의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 한국 측 주창에 따른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의 식용어류 및 어류제품의 한국 공급조건들에 관한 결정문이 채택됨. 2012년 1월 1일부터 한국으로의 수출은 등록을 통과한 러시아 어류가공업체들과 선박들, 목록에 포함된 승인받은 어류·어류제품수출업자들에 의해 실현될 예정이며, 안전한 어류제품 출하에 관한 한국의 요구사항에 입각하여 작성된 새로운 양식의 수출(위생)증명서를 동반해야 함

(자료: 연방수산청, 피쉬뉴스)

□ 2011년 러시아 어획량, 전년대비 5% 이상 증가

- 2011년 러시아 어업기관들의 수산물 총 어획량은 2010년 대비 5.1%(193.7천 톤) 증가한 4,021.8천 톤으로 집계됨. 전통적으로 어획량이 가장 많은 극동어장과 북부어장 두 곳에서만 지표 증가를 보이고 있음
- 극동어장에서는 전년대비 298.5천 톤이 증가한 2,791.5천 톤을 기록함. 그중 명태 어획량은 2.8천 톤 증가하여 1,549.6천 톤을 기록
- 북부어장 어획량은 전년대비 74.6천 톤 증가한 574.4천 기록. 대구 어획량은 47.7천 톤 증가하여 307.8천 톤 기록
- 그 외 나머지 어장들에서는 어획량 지표가 감소함. 발틱해에서 러시아어민들은 전년대비 5.4천 톤 감소한 35.9천 톤을 어획함. 그중에서 청어(sprat) 어획량은 6천 톤 감소한 18.1천 톤 기록, 발틱 청어는 0.3천 톤 감소한 8천 톤 기록
- 아조프-흑해어장에서는 전년대비 0.2천 톤 감소한 29.8천 톤 기록. 하지만 유럽안초비 어획량은 2.4천 톤 증가한 14.5천 톤 기록
- 카스피어장에서는 전년대비 2.1천 톤 감소한 35.6천 톤 기록. 정어리(kilka) 어획량은 전년대비 1.1천 톤 감소한 1.1천 톤 기록
- 외국수역에서는 전년대비 169천 톤 감소한 398.2천 톤 기록. 국제협약수역 및 개방국제해역에서는 전년대비 2.7천 톤 감소한 156.4천 톤 기록

(자료: 핀마르케트 통신)

□ 러시아 수산물 수출입동향 - 어류 수입량 13.9% 감소, 수입액 13.3% 증가

- 식품 수입은 증가함(21.3%)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어류 수입량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0월간 어류(신선 또는 냉동)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3.9% 감소(650.0천 톤→559.6천 톤), 수입액은 13.3% 증가(1,324.9백만 달러→1,500.6백만 달러)
- 러시아산 증가 및 수입산 감소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11년 1~10월간 러시아 어류 수입현황 >

(단위: 천톤, US백만달러)

HS코드	품목	2010년 1-10월		2011년 1-10월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금액
01류-24류	식품 및 농업원료 (작물원료제외)	-	26,217.3	-	31,810.8	21.3
0302-0304	어류(신선·냉동)	650.0	1,324.9	559.6	1,500.6	13.3

자료: 러시아 관세청

- 2011년 1-11월간 러시아의 어류 수입은 20% 이상 감소함. 이와 같은 감소는 지난 10년간 처음 기록된 것임
- 관세청 잠정치에 따르면, 2011년 11개월간 러시아는 전년동기(505천 톤) 대비 21.9% 감소한 394.3천 톤의 냉동어류(손질하지 않은 것)를 수입함
- 이 기간 동안 어류 수출은 6% 증가(1,118.6천 톤→1,186.3천 톤)
- 이와 같은 수치는 러시아어류시장에서 최근 몇 년간 수입대체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훨씬 더 식품가치가 높은 품질좋은 자국산 어류가 품질낮은 수입산 어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음
- 매년 안정적으로 4-5%가량 증가하는 어류 어획량은 수입산 어류 및 어류제품을 밀어내고 있고 수입산 어류의 비중은 20% 가량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즉, 2020년까지 러시아국내시장에서 러시아산 어류 규모는 최소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1~11월간 러시아 수산물 수출입동향 >

(단위: 천톤, US천달러)

HS 코드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가격(\$/1톤)	물량	금액	가격(\$/1톤)
03류	어류 및 갑각류, 연체동물	-	2,212,995	-	-	2,040,690	-
0301	활어	-	-	-	0.2	10,197.0	...
0302	신선·냉장어류	0.2	494.7	...	109.4	636,810.6	5,821.7
0303	냉동어류	1,182.5	1,675,090.2	1,416.5	402.4	737,801.4	1,833.6
0304	어류피레트	57.5	228,676.3	3,977.4	113.9	299,359.7	2,627.5
0305	건조, 염장어류	3.9	22,075.3	5,696.9	10.0	41,232.9	4,117.6
0306	갑각류	31.5	246,059.0	7,823.7	51.0	232,783.0	4,563.5
0307	연체동물	12.6	40,599.2	3,226.8	25.1	82,505.4	3,281.0
16류	어류조제품	-	-	-	-	-	-
1604	조제·저장처리어류	16.3	44,528.6	2,740.2	72.5	142,591.0	1,966.1
1605	조제·저장처리 갑각류, 연체동물	0.8	6,520.0	7,962.8	9.3	47,571.6	5,100.9

자료: 연방통계청

주: 카자흐스탄과의 무역지수 합산하지 않은 잠정치(러시아 관세청 자료근거)

(자료: 러시아연방수산청, 관세청, 연방통계청, 러시아해외모니터)

“<저작권자 © aT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